

의료폐기물 위탁운반 및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1. 계약자는 동국대학교 BMC(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32 소재, 이하 'BMC')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계약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거운반업으로 허가를 교부 받은 업체 이어야 한다.
 - ②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처리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의료폐기물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관리법 및 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해 의료폐기물을 주 1회 이상 종류별로 수거하여야한다. (단, BMC의 사정으로 특별히 수거 요청시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용기(박스, 합성수지 용기, 내부보관용 비닐 등)를 용도에 맞게 BMC가 지정한 의료폐기물 창고에 비치하여야 하며, 용기의 양은 월 평균 소모량과는 별도로 3분의 1이상 만큼의 여분을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BMC 책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요구에 충실히 따른다.
4. 계약자는 전자태그시스템(RFID) 의무화에 필요한 태그 용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5. 계약자는 폐기물 수거시에 BMC의 폐기물 처리 책임자의 입회 하에, 비치된 위탁처리대장을 기록·날인하고 입회자의 확인과 날인을 받아야 한다.
6.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의 적정 이행을 위하여 BMC 회계규정 등에 의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다음달 초 수거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하여 담당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7. 계약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할 시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보증금은 BMC에 귀속된다.
8. 수거방법
 - ① 의료폐기물은 BMC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되 BMC의 별도 수거 요청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용기를 반드시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제7호 다목에 정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용용기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한 용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검사기관 :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10. 준수사항

① 계약자는 의료폐기물을 수거·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기준및방법), 별표6(인계서작성), 별표8(준수사항) 각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폐기물보관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분리보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 1) 폐기물처리계획서 사본
- 2) 폐기물분석결과서 사본
- 3) 수탁확인서 사본
- 4) 운반자용 인계정보 또는 인계내역 사본

11. 인력지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법한 배출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자는 BMC의 지원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책임소재

계약자가 위탁받은 의료폐기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운반작업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파손시에는 즉시 관련직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3. 계약기간 : 2023.06.01.~2024.05.31.(1년)

14. 대금지급 : 계약서 상 단가를 기준으로 월 1회 사용량에 따른 금액 지급

15. 담당자 연락처 : BMC종합행정실 하창구(031-961-5456)